

서울특별시

우100-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50-8591~4 / 전송(02)750-85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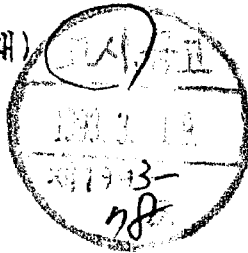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: 녹지 52140 - 372

시행일자 : 1993.03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: (내부 결재)

참조 :



취급		시	장	
보존	영구, 준영구 10. 5. 3. 1			0336
부시장	전철			결재 1993. 3. 18 부시장
환경녹지국장	홍			법무담당관 심사관
녹지과장	629			
기안	녹지보호계장			협조

제 목 : 지정보호수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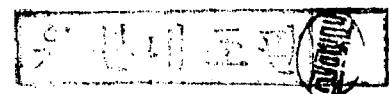
1. 동작공녹 52140-285(93.2.25)호 및 도봉공녹 62140-225(93.3.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산림법 제67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노거수 194주중 자연고사된 2주를 산림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별첨과 같이 시보에 고시코자 합니다.

가. 해제 보호수

보호수 품격	지정번호 (지정년월일)	위 치	수종	수령	소유자	해제사유
구나무	1-14-36 (81.10.27)	동작구 사당동 281-1	느티나무	300년	사유 (심규섭)	자연고사
동나무	1-7-14-12 (68. 7. 3)	도봉구 우이동 44-1	느티나무	200년	서울 특별시장	자연고사

나. 해제 일자 : '93. 3.

첨 부 : 고시문(안) 1부. 끝.



원본은 녹지과에 보관함

(제 2 안)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공원녹지과장

제 목 : 지정보호수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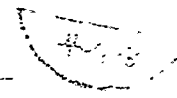
1. 동작 공녹52140-285(93. 2.25)호 및 도봉 공녹62140-225(93. 3. 9)호와 관련임.
2. 우리시에서 산림법 제67조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거수 194주중 자연조사된 2주를 산림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였으니 보호수 표지판을 회수하고 보호수의 보호관리 지침(녹지27620-881<89. 9.20>)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가. 해제 보호수 : 제 1원 "가향" 이기 시병

나. 해제 일자 : '93. 3. .

첨 부 : 고시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처 : 도봉, 동작구

(제 3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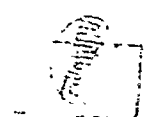
수 신 : 공보1담당관

제 목 : 시보게재 의뢰

산림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보호수 해제내역을 별첨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(안) 1부. 끝.

녹지과장





201	3315	86
담당		
신	한	홍

서울특별시고시 제/993-28 호

~~제~~ ~~목~~ ~~적~~ 정보보호수*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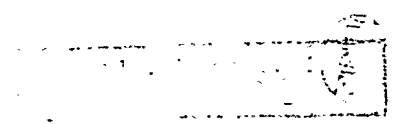
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^{장이} ~~정보~~ 보호수로 지정관리하는
 수목종 고사된 2주를 산림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였기 이를
 고시합니다.

1993. 3.

서울특별시장

○ 해제 내역

보호수 품 격	지정번호 (지정년월일)	위 치	수종	해제일자	사유
구나무	1-14-36 (81.10.27)	동작구 사당동 281-1	느티나무	93. 3.	고사
동나무	1-7-14-12 (68. 7. 3)	도봉구 우이동 44-1	느티나무	93. 3.	고사



현 황 사 진



동작구 사당동 281-1



도봉구 우이동 41-1

부서장

